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문화·무형·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국가유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24일까지에서 2028년 7월 24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문화유산위원회·자연유산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9호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5항제26호 중 “문화유산위원회의 구성·운영 총괄 및”을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7호, 같은 조 제8항제16호, 같은 조 제10항제16호, 제21호, 같은 조 제1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3호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국가유산위원회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9조제5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국가유산위원회 지질·명승·조경분과위원회의 운영

제10조제3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무형유산위원회 전통기술분과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 전통기술·지식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항 중 “2026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7월 25
일”을 “2028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7월 25일”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 중 “2026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7월 25일”을
“2028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7월 25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유산정책국) ① · ② (생략)	제7조(유산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문화유산위원회 · 자연유산위원회 · 무형유산위원회의</u> 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 <u>국가유산위원회</u> ----- ----- -----
4. ~ 20. (생략)	4. ~ 20.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세계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문화유산위원회</u>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및 세계기록유산한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u>국가유산위원회</u> ----- ----- -----
10. ~ 14. (생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유산국) ① ~ ④ (생략)	제8조(문화유산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25. (생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u>문화유산위원회의</u> 의 구성 ·	26. <u>국가유산위원회</u> -----

운영 총괄 및 동산문화유산분
과위원회의 운영

27. ~ 29. (생략)

⑥ 근현대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17. 문화유산위원회 근현대문
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18. ~ 22. (생략)

⑦ (생략)

⑧ 역사유적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16. 문화유산위원회 사적분과
위원회의 운영

17. (생략)

⑨ (생략)

⑩ 유적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16.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
분과위원회의 운영

17. ~ 20. (생략)

21. 문화유산위원회의 매장유
산 평가·보상 업무에 대한
지원

27. ~ 29. (현행과 같음)

⑥ -----
-----.

1. ~ 16. (현행과 같음)

17. 국가유산위원회 -----

18. ~ 2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15. (현행과 같음)

16. 국가유산위원회 -----

17.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15. (현행과 같음)

16. 국가유산위원회 -----

17. ~ 20. (현행과 같음)

21. 국가유산위원회-----

--

22. (생략) ⑪ 건축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u>문화유산위원회</u>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⑫ 민속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u>문화유산위원회</u>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운영 14. (생략) ⑬·⑭ (생략) 제9조(자연유산국) ①·② (생략) ③ 자연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u>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총괄</u> 7. ~ 20. (생략) ④ 동식물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u><신설></u>	22. (현행과 같음) ⑪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국가유산위원회</u> ----- ----- ⑫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국가유산위원회</u> ----- ----- 14. (현행과 같음) ⑬·⑭ (현행과 같음) 제9조(자연유산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7. ~ 20. (현행과 같음) ④ ----- -----. 1. ~ 18. (현행과 같음) 19. <u>국가유산위원회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u>
--	--

⑤ 명승전통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신설>

⑥ (생략)

제10조(무형유산국) ①·② (생략)

③ 무형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총괄

10. ~ 18. (생략)

④ 무형유산예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예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 13. (생략)

⑤ 무형유산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무형유산위원회 전통기술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 16. (생략)

⑤ -----
-----.

1. ~ 20. (현행과 같음)

21. 국가유산위원회 지질·명승·조경분과위원회의 운영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무형유산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10. ~ 18.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산위원회 -----

5. ~ 13. (현행과 같음)

⑤ -----
-----.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산위원회 전통기술·지식분과위원회-----

5. ~ 16. (현행과 같음)

⑥ 무형유산지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u>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u> 5. ~ 18. (생략)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생략) ②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전통공예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u> 6. ~ 14. (생략) ③ (생략)	⑥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 18. (현행과 같음)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 1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